

2024회 계 연 도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소 관 결 산
예 비 심 사 보 고

▣ 보 건 복 지 부	소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 관
▣ 질 병 관 리 청	소 관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2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3
IV. 대체토론 요지	23
V. 소위원회 심사보고	25
VI. 심사결과	27
VII. 부대의견	28
※ 불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29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8. 27.

보건복지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보건복지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기금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연금기금
- 응급의료기금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 질병관리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기금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 응급의료기금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5. 5. 30.

2. 회부일자: 2025. 6. 2.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회부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6.)

상정, 소위원회 심사, 소위의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대체토론, 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I -114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예산액은 8조 9,377억원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이 의료급여기금의 결산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5,000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 및 체계적인 운용 계획 없이
기금을 사용하여 충분한 기금 적립금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2025년도 하반기 의료급여의 예산 부족에도
활용 가능한 기금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142쪽) 다음은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교부 주의’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업은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14억 8,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교부된 보조금 약 10억 9,8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불용되었는데,

2024년 보조금 교부 이전에 그 불용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으므로,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175쪽)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은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으로 수립된 1992년 이후 이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율은 계속 감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지원율은 약 1.82%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I -190쪽) 다음은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교부 주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중앙관리직 1인이 2024년 11월에서야
채용되었으므로, 인건비 2개월분만 교부하고 미채용기간의
인건비는 교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2회에 나누어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채용을 위해 중앙관리직의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검토하되, 불용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316쪽)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입니다.

인구아동정책관실 소관 국고 지원 아동복지시설로서
2024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인건비는 2024년도 예산액 총
727억 8,400만원 중 67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는데,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각각 96.2%, 92.7%, 95.4% 등 모두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뿐만 아니라,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요보호아동그룹홈 등
3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I -391쪽) 다음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및 화장시설 확충 필요’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주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11억 3,700만원 중 실행액은 295억 3,800만원으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화장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 대도시권에서 3일장 비율이 낮은 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도시권 화장로 신·증설 등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459쪽)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선정 기준 완화 및 정보 제공 강화 필요’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은 도전행동 등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 24시간 개별, ▲ 주간 개별, ▲ 주간 그룹형 등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실적은 세 가지 유형 모두 실집행률과 이용률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주간 그룹형은 실집행률 11%, 이용률 17%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과 낮은 인지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거점을 활용한 안내·홍보를 강화하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524쪽) 다음은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필요’입니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1억 9,500만원 중 28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불박이
가구를 제작·설치하였는데,

해당 불박이 가구를 설치한 곳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이고, 불박이 가구와 같은 내구성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35쪽) 다음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의 내역사업 중 ‘행정처분 및 면허신고제 관리’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면허신고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1,500만원 중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대상 직역을 달리하여 면허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미신고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사전통보 후 본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사전통지 도달 여부 및 점검주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처분 여부가 달라지고, 면허효력정지기간 중 행한 의료행위등에 대하여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간 처벌규정 유무에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91쪽) 다음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잔여병상·대기정보 공개 및 대기현황의 적시적 갱신 등
필요’입니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 호스피스 관련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에만 사용되고 있어, 잔여병상 및 대기정보 등 호스피스
신청에 필수적인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가 확인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호스피스서비스 대기자의 사망정보가 대기현황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잔여병상 및 대기현황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스템에서 잔여병상 및 대기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정보의 갱신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151쪽) 다음은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입니다.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은 한국한의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1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한의학 육성법」 개정(2024. 1. 1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의 경우 226개 기초지자체 중 78개 기초지자체가 여전히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바, 컨설팅 강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한의학진흥원’의 법정 업무에 ‘지역계획 수립 지원 업무’도 추가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Ⅱ-191쪽) 다음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46억 500만원 중 145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비는 2024년 예산액 139억 2,100만원 중 약 82억 3,300만원(59.1%)만이 실집행되었는데 이처럼 실집행이 부진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당의 모델별 정책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목표 및 소요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205쪽) 다음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개별심사 대상에 대한 세부심사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9억 8,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별심사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원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별심사와 관련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지급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245쪽) 다음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업은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한 산업 진흥, 기술 표준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액 2억원이 편성되어 1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7,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전 타당성 조사가 2024년 7월부터 시작됨으로써 연내에 종료되지 못하고 7,600만원이 이월된바, 향후에는 설립 부지 결정 및 건축계획 수립 등 후속 연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317쪽) 다음은 ‘심리상담 바우처 이용자 수 및 이용 횟수
과다 추계 주의’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이용자 수 및 이용 횟수를 과다 추계함에 따라 2024년
실집행률이 30.1%에 그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전국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법령적 근거가 미흡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분야 학위 소지자가 일정 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갖춘 경우 부여되는 민간자격에 대해 동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Ⅱ-372쪽) 다음은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필요’입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은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학부-전공의-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의 의과학 연구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액 83억 9,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한 2024년 2월 이후 전공의 다수가 사직하게 되면서, ‘전공의 수련 중인 대학원 재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내내역사업에서 ‘중도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교부된 15억원 중 9억 4,700만원(63.1%)이 반납되어 실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2024년 1/4분기부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제한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24년 7월 보조금 전액을 교부 완료한바,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Ⅱ-425쪽) 다음은 ‘사업 지연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정밀·맞춤의료 등 다양한 바이오 헬스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전략 자산으로서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총 170억 5,200만원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42억 2,600만원 등 총 163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참여자 모집기관 선정 지연(2024년 12월 완료)으로 동 사업의 핵심인 참여자 검체 수집 목표 (2024년 1만 9,000명 모집 계획)를 전혀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검체 수집 지연으로 인한 사업 일정 차질의 최소화 및 참여자 모집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Ⅲ-61쪽)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입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2016년 20개국 140개소, 1,07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12개국 107개소, 803개 제품으로 감소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제도는 수출국 현지의 생산단계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업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Ⅲ-92쪽)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예산의 목적 외사용 주의 필요’입니다.

‘인허가 심사지원 등 사업’의 내역사업인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은 업체의 의약품등 수입품목의 허가·신고 신청이 있으면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이용하여 현지실사를 수행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금액을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이·전용을 통한 증액이 곤란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지실사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은 ‘기타 잡수입(수입대체경비)(세입)’으로 수납되는데, 해당 세입은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를 때 현지실사에 드는 경비, 즉 세출만큼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출 대비 과다편성된 문제가 있어 향후 예산을 면밀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Ⅳ-165쪽) 이어서, 질병관리청 소관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미지급금 문제’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인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를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백신비와 접종 시행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537억 7,200만원 중 3,537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의 경우 인구수 과소 추계의 사유로 356억 2,3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도 172억 2,4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하고 향후에는 미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IV. 대체토론 요지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관리 강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확대할 것
- 장애인 의료비 누적 미지급금 해결 대책 마련할 것
-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보고할 것
- 모든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 기능을 기본으로 넣는 방안 검토할 것
- 전국 모든 스포츠경기장의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
-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개선된 추진계획 마련할 것
-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 검토할 것
- 전공의와 PA간호사와의 업무 혼란 방지 및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민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 통합돌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할 것
- 의약품 공급 관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체계 등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계획 보고할 것
- WHO에서 한국인력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보고할 것

-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자가 여전히 입양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할 것
- 의료대란과 같이 전국적으로 환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태를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검토할 것
-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하고 보고할 것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단가 조정 및 전문수당 지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할 것
-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병원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검토할 것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와 구간별 시간 확대, 본인부담금의 완전 폐지 검토할 것
- 해부교육 지원센터 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및 한국형 ARPA 사업 등 절차 및 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치할 것
- 코로나 백신 피해자에 관한 법령 제정시 피해자의 의견 수렴할 것
- 환자 기본법, 환자 안전법,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협력할 것
- 검체 결과가 뒤바뀌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4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치료보호가 특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 희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없이 추진한 경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 전 예산이 집행된 과정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업추진 체계를 재검토하며, 서비스 품질 및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 의료대란 수습 과정에서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청구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부담이득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노력할 것,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

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국립병원 인력 미충원에 대한 개선책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 총 10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제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약국 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기후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등 총 1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신종 감염병, 재유행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체계적인 결핵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검진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결핵검진 이행 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등 총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인력의 확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VI. 심사결과

1. 보건복지부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16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16건
- 제도개선 104건
- 중복 4건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4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1건
- 제도개선 13건
- 중복 0건

3. 질병관리청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4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0건
- 제도개선 24건
- 중복 0건

VII.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 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건, 질병관리청 0건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 154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보건복지부	-	-	-	16	104	4	11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13	-	14
질병관리청	-	-	-	-	24	-	24
합계	-	-	-	17	141	4	154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3억원이 편성됨. - 2024년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후속연구’ 명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타 비목으로 전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불필요한 연구용역비의 편성을 지양할 것		
2	국제부담금으로의 비목변경을 통한 통합적 분담금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WPRO 전략사업 추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WPRO간 체결된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지급됨에도, 해외교포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해외경상이전(340-01) 비목으로 편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전략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WPRO 전략사업 추진’ 사업의 비목을 국제부담금(340-02)으로 변경하여 해당 예산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		
3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예산 편성 정확도 제고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부부감액 비율 등 개별 변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예산액이 과다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대규모 불용이나 이·전용(감)이 발생하였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등 비율: 편성 vs. 실제 〉																																																					
			<table><tr><th colspan="2">비율 (단위: %)</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 rowspan="2">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td><td>편성</td><td>5.0</td><td>5.0</td><td>5.0</td><td>5.0</td><td>5.0</td><td>8.0</td></tr><tr><td>실제</td><td>12.3</td><td>13.0</td><td>9.1</td><td>10.0</td><td>10.7</td><td>12.7</td></tr><tr><td rowspan="2">부부감액</td><td>편성</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r><tr><td>실제</td><td>41.7</td><td>42.2</td><td>42.8</td><td>43.1</td><td>43.4</td><td>43.8</td></tr></table>		비율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편성	5.0	5.0	5.0	5.0	5.0	8.0	실제	12.3	13.0	9.1	10.0	10.7	12.7	부부감액	편성	40.0	40.0	40.0	40.0	40.0	40.0	실제	41.7	42.2	42.8	43.1	43.4	43.8												
			비율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편성	5.0	5.0	5.0	5.0	5.0	8.0																																																	
	실제	12.3	13.0	9.1	10.0	10.7	12.7																																																	
부부감액	편성	40.0	40.0	40.0	40.0	40.0	40.0																																																	
	실제	41.7	42.2	42.8	43.1	43.4	43.8																																																	
〈 최근 3년간 기초연금급여 집행내역(단위: 십억원) 〉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6">보건복지부</th><th colspan="2">지방자치단체</th></tr><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현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액</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본예산</th><th>추경</th></tr><tr><td>24결산</td><td>20,179</td><td>20,179</td><td>△202</td><td>-</td><td>19,977</td><td>19,587</td><td>390</td><td>19,488</td><td>99</td></tr><tr><td>23결산</td><td>18,508</td><td>18,508</td><td>△10</td><td>-</td><td>18,498</td><td>18,168</td><td>330</td><td>18,058</td><td>110</td></tr><tr><td>22결산</td><td>16,092</td><td>16,267</td><td>13△120</td><td>93</td><td>16,254</td><td>16,254</td><td>-</td><td>16,149</td><td>105</td></tr></table>		구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교부액	불용액	실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4결산	20,179	20,179	△202	-	19,977	19,587	390	19,488	99	23결산	18,508	18,508	△10	-	18,498	18,168	330	18,058	110	22결산	16,092	16,267	13△120	93	16,254	16,254	-	16,149	105					
구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교부액	불용액	실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4결산	20,179	20,179	△202	-	19,977	19,587	390	19,488	99																																															
23결산	18,508	18,508	△10	-	18,498	18,168	330	18,058	110																																															
22결산	16,092	16,267	13△120	93	16,254	16,254	-	16,149	105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최신 추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부부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규모 불용과 이·전용을 최소화할 것																																																						
4	재정건전성과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지적사항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70%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단위: 조원)〉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2014</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h>2025</th> </tr> <tr> <td>계</td> <td>6.9</td> <td>11.8</td> <td>14.7</td> <td>16.8</td> <td>18.9</td> <td>20.0</td> <td>22.5</td> <td>24.4</td> <td>26.1</td> </tr> <tr> <td>국 비</td> <td>5.2</td> <td>9.1</td> <td>11.5</td> <td>13.2</td> <td>14.9</td> <td>16.1</td> <td>18.5</td> <td>20.2</td> <td>21.8</td> </tr> <tr> <td>지방비</td> <td>1.7</td> <td>2.7</td> <td>3.2</td> <td>3.6</td> <td>3.9</td> <td>3.9</td> <td>4.0</td> <td>4.2</td> <td>4.3</td> </tr> </table>									구분	2014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9	11.8	14.7	16.8	18.9	20.0	22.5	24.4	26.1	국 비	5.2	9.1	11.5	13.2	14.9	16.1	18.5	20.2	21.8	지방비	1.7	2.7	3.2	3.6	3.9	3.9	4.0	4.2	4.3		
		구분	2014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9	11.8	14.7	16.8	18.9	20.0	22.5	24.4	26.1																																										
국 비	5.2	9.1	11.5	13.2	14.9	16.1	18.5	20.2	21.8																																												
지방비	1.7	2.7	3.2	3.6	3.9	3.9	4.0	4.2	4.3																																												
	○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제도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한 소득 제고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재정건전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지원체계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5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38~66.7%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2009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율이 5%로 급감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100억원(정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지원율은 3%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지출액) 기준 지원율은 약 1.82%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13년 대비 2024년 물가가 23% 상승했음에도 특별생계비(월 7만 5,000원), 임대보증금(1,770만원) 등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음. ○ 아울러, 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		
7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으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음. - 2024년 준수율: 노인보호전문기관 95.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2.6%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8	냉방비·부식비· 시설보수비 등 경로당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반복적으로 전용되고 있음에도 실집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개소당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공동주택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 간 1인당 지원금액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시·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부재함. ○ 폭염 등 이상기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건강취약계층으로 기온변화에 취약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경로당, 일반 경로당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규모·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 부식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보건복지부는 시·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쉼터로서 경로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냉방비 등 경로당 지원 내역 및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자체집행 제고 및 내실화,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52억원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 충당을 위해 전용감되는 등, 연례적으로 전용재원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25만 1,000명임. ○ 취약계층노인의 노후소득 보완 목적의 공익활동형 사업대상자 선정이 기초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활동비 단가가 낮고,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사업 대기자가 많고 만족도도 낮음.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율은 11.5%(공동체사업단 17.5%),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4,034건으로 사업운영·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 고용불안정 등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동사업의 대기수요를 고려할 때, 전용이 아닌 자체집행의 비율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참여대상자 선정기준과 활동비 단가와 함께 대기수요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율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급여체계 마련 및 인력 확충 등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12개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형 사업’ 외에도, 202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인력 배치 등 비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술지원형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나 통합지원 정책·시범사업 평가 등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형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11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 재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령친화산업육성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예산 미반영으로 2024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자체 출연금으로 우수제품 지정(73건) 업무만 수행했을 뿐,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혁신형 기업 지원 등은 중단된 상태임. ○ 전세계적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로 육성하려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세계시장규모: 2015년 4.2조 유로 ⇒ 2025년 6.4조 유로(약 8,800조원) 전망 - 국내시장규모: 2022년 83조 ⇒ 2030년 143조원 전망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세부사업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교통비·통신비 등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만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설 신·증축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서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지연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14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실행행률은 57.2%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만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은 6개소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의 건축단가(198만원/㎡)가 조달청 노유자 시설의 3개년(2022~2024년) 평균 건축단가(358만원/㎡)의 55% 수준에 불과하여 2022년 6개소, 2023년 1개소 등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계속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대상기관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된 기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8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미설치 7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단가가 조달청 단가에 비해 너무 낮아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단가 현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5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에는 관리해야 할 장비 수가 2024년 27만 2,000대보다 2만 1,000대 늘어난 29만 3,000대임. ○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기간제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야간·휴일 응급상황 대응, 출장·교통비 지원 미비 등으로 이직률이 높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임금수준 상향, 부대비용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 구축 (2234-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을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6.7%인 94개소임. 특히, 도시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 충족률이 45.6%인 반면, 농촌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기준 충족률이 20.7%에 불과한 실정임. ○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2022년도 446억 7,100만원(개소당 1억 7,450만원)에서 2023년도 251억 2,200만원(개소당 9,813만원)으로 감액(△43.8%)되었고, 2025년도 계획액에도 301억 4100만원(개소당 1억 1,174만원)만 반영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기준 충족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환자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17	수요를 고려한 노인실명예방수술 비 예산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노인건강관리(22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비 지원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술비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하고 있고, 2024년에도 8월에 마감된 바 있음 ○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20억 5,400만원)은 2022년 계획액(20억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신청이 매년 조기 마감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확대를 검토할 것		
18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부당청구 관리·징수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부당이득금 징수율도 저하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필요		는 등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부당이득금은 506억 7,000만원, 적발기관은 1,127개소, 징수액은 402억 3,000만원임. 징수율은 2015년 97.73%에서 2024년 79.39%로 18.34%p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중 최저치임. * (부당이득 결정건수·금액) ('11~'24) (건수) 226,147건, (금액) 4,096억 2,500만원 ** (부당이득금 징수율) ('22) 86.2% ('23) 89.6% ('24) 79.4%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 규모·유형·징수실적의 분기별 모니터링·분석, 고위험 기관 선별·점검 체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한 현지조사·자율점검 실효성 제고 등 부당청구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미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강구 등 부당이득금의 철저한 환수를 노력할 것		
19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국회보고 제도 도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예·결산 및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20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의 실행행률이 전년(70.9%) 대비 개선된 85.1%였으나, 이는 예산액이 2023년 10억 7,600만원에서 2024년 8억 3,800만원으로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감액 편성됨에 따른 효과로, 참여 아동 수나 연간 이용 건수에 있어 의미있는 변화는 적고, 시·도별 집행 실적에서도 평균 85.1%보다 낮은 지자체(광주광역시 73.1%, 대구광역시 78% 등)가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 등 사업 활성화 노력과 함께 지역별 실효행사를 편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1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등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의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취지의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 수행 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22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 개선과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은 평균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48.6명에 이르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가 열악하여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재용 인력의 이·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2024년 실효행내역은 예산액 91억원 중 불용액이 18억 7,300만원으로, 사례관리실적은 목표인 2,750명을 초과하여 3,491건이었음에도 불용액이 상당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인건비 단가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상 편성 기준 사례관리 대상자보다 실제 사례관리 대상자가 초과된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 편성과 배분 방식을 개선할 것		
2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8,000명 대상 월 15만원씩 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효행률은 21.3%인 2억 7,700만원에 불과함(시스템 운영비 1억원 제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실제 지원된 금액 12억원 기준으로는 14.8%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인 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이용자 수·이용 횟수·지급 금액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정밀 분석하여 사업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24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실효행률은 44.4%에 그쳤고, 서울은 78.6%인 반면 전남 13.8%, 경기 22.5% 등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임. 아울러 국가가 매칭해서 지급되는 아동용품 지원 사업 외에,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금액만큼 아동용품구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 권고 수준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아동용품구입비가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집행 실적이 낮은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25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 시 재외동포청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13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2024년도 예산 16억 1,000만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바, 보건복지부의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과 사업 대상·내용, 추진체계가 유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 시 국외 입양인 단체와의 효율적 소통 및 네트워크 활용의 장점이 있는 재외동포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		
26	영유아·고위험아 동 돌봄을 위한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낮은 쉼터 설치 지원단가 등으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2024년도 신규 설치는 8개소에 불과하는 등 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실효행률이 15%에 그치고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필요 등	시정요구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2.7% 수준,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95.4% 수준임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고위험아동을 위한 돌봄 쉼터 설치 확대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및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쉼터 등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7	아동발달지원계획의 대상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획(1335-302) ○ 아동발달지원계획의 실행률 현황이 2020~2023년까지 74.2%~85.9%였으나 2024년에는 66.5%에 불과하고, 2025년에 추가된 차상위계층 계좌 가입률도 1분기 기준 25.3%에 그침 ○ 예산 편성 시 가입대상자의 가입률 추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고, 2024년 보호대상 아동 가입률(99.4%)에 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률(74.9%)이 낮은 수준임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해 후원 활성화 방안 및 조기인출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면밀한 편성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28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일반회계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 증진(1337-304) ○ 내역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에 포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4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다루게 하는 ‘약식 보고 절차’를 표준 보고 절차로 결정하면서 우리 나라도 약식 보고 절차를 따르게 된바,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과 상이한 사업으로서 2024년 10월에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함 ○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회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연도 중에 설정된 다른 신규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는 10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5개소가 설치되어 예산액 24억원 중 14억원만 집행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예산도 433억 3,100만원 2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시·도별 거점 심리치료센터 지원 인력의 경우 지역별 아동 인구나 사례 건수 등은 다를 것임에도 정원이 대부분 3명으로 동일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2%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거점 심리치료센터 지원 인력을 지역별 아동 인구, 사례 건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심리치료 연계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및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30	아동수당 오지급 규모를 줄일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수당 지급(25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오지급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9억 3,236만원, 2023년 22억 3,195만원, 2024년 27억 3,202만원으로 오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오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위기임산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지원대상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지역 간 편차 없는 상담인력 지원 필요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보호출산 산모를 300명으로 추계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각 100만원, 숙려기간 지원으로 각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7월 1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의료비만 지원한 건수는 6건, 숙려기간 비용만 지원한 건수 6건, 의료비·숙려기간 비용 모두 지원한 건수 39건으로,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실행액은 1억 800만원(15%)에 불과함 ○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기준 12개 지역상담기관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인데, 광주·충북 100%, 제주·경기 각 53%, 75.35% 등 지역별 실행률 편차가 크게 나 타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위기임산부 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 상담인력의 안정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보호출산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2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아동센터 지원(1338-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상담·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복지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및 파견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기준 배정 교사(3,472명) 대비 11.6%인 403명이 한 해 동안 퇴사하였고, 특히 단시간(12시간) 교사의 퇴사율(14.4%)이 전일제(25시간) 교사의 퇴 사율(10.6%)보다 높은 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교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		
33	2025회계연도 저출산고령사회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253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25회계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원회 사무처 지원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 공백 대책 마련 및 유사 업무 중복 지양		회 사무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사무처는 과전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문성 및 정책 연속성 확보에 제약이 있고, 사무처가 수행하는 연구·홍보·정책 개발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유사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조직 개편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배제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편성 절차에 신중을 기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 거버넌스가 개편될 경우 사무처 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정립할 것		
34	고립·은둔청년 적극적 발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국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이 가족돌봄청년보다 6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발굴 실적은 오히려 적어 정책의 목표 설정과 집행 방향에 문제가 있음. ○ 2024년 11월 한 요식업체 앱을 통한 2주간의 홍보만으로도 1,653명의 은둔청년이 자가진단에 참여하였듯이 홍보·접촉 수단에 따라 발굴 효과가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청년의 추정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발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 ○ 보건복지부는 SNS, 온라인 플랫폼,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발굴 이후 참여를 촉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		
35	전담조직 개소 지연 재발 방지 및 인력 처우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4개소는 지방비 매칭 등 재원 마련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소가 예정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인력 측면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2024년말 기준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집행률 24.3%,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집행률 47.6%).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개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전담조직 인력의 처우도 유사직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		
3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구조 개선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등 내내역사업을 통하여 냉동난자 해동 이후에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는 냉동난자 해동까지만 지원하고 이후과정은 전액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난임진단 여부에 따라 냉동난자 해동 이후의 절차를 이원화하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난임진단 여부와 관계 없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것		
37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비의 합리적 배분 방식 마련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말 기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전국 9개소가 있는데, 각 개소별 동일하게 1억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각 개소별 연간 상담 횟수는 최다인 곳이 7,052건이고 최소인 곳이 4,335건임. ○ 2024년부터 2025년 5월말까지 각 개소별 상담 인력 1인당 상담 건수를 비교하면 최다인 곳이 3,644건, 최소인 곳이 1,641건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수요량과 관계없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되, 그 밖의 계획액은 전년도 심리상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동 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		
38	생애초기 건강관리 내내역사업의 실효성을 부진 개선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말 기준, 동 내내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소의 인건비 및 사업비 (자치단체경상보조)는 34억 5,100만원으로서 계획현액 50억 7,200만원의 68%였고, 2023년의 해당 실효성은 60.3%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도록 독려할 것		
39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당초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동 사업비는 계속해서 국민연금기금에 반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40	예산 추계정확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미교부액은 1,544억 2,600만원이고 교부된 예산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액은 1,457억 8,400만원으로, 이·전용액 26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총 3,264억 2,200만원이 과다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안전망으로서 생계급여 사업의 목적과 기능,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계 재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요에 대한 추계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기금의 체계적 관리계획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의료급여 예산은 실집행률 98.9%로 추계는 양호했으나, 정부가 의료급여기금 사용을 전제로 일반회계 예산 5,000억원을 미배정하여 불용 처리됨. ○ 적정 준비금 기준과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없어, 2025년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1,341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시·도와 협의 없이 기금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미배정한 점도 절차상 미흡했으므로, 건강보험 준비금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준비금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시·도 협의 강화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체계적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도별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금 수준과 적립금 활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42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사업 개선 및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시군구에 10명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로 인하여 2024년에는 지역별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20명→10명) 조정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58%로 저조했다는 점, 농촌지역 등에서 의료·주거·돌봄체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지역별로 사업활성화 차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돌봄·식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관리사가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와 지역별 사업실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 종결 인원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타 복지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것		
43	자활성공을 제고를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적사항	○ 최근 5개년 자활성공율은 2020년 25.87%, 2021년 26.24%, 2022년 24.3%, 2023년 24.76%, 2024년 18.66%로 나타났으며,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6.1%p 하락하는 등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자활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운영이 참여자 근로능력 향상보다는 단가 인상 및 참여자 수 확대 등 외형적 확대에 치중된 측면이 있음. ○ 자활사례관리의 경우, 전국 125명의 인력이 약 6만 명의 자활참여자를 담당하고 있어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2025년 10월부터 도입 예정인 자활성공지원금 또한 자활 성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애초에 근로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활성공율 제고를 위해,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44	실집행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137-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가입자 및 해지자 수를 토대로 한 계산 결과, 약 85억 8,3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 월별 가입 유지자 규모와 신규 가입자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금을 분할·단계적으로 교부하여 불용·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 예산의 실집행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45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2631-32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중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각각 33억 4,500만원, 28억 900만원으로 실집행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 대부분이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발생한 인건비집행잔액으로,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교부된 보조금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적정 인력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8	임금 수준 현실화 검토 및 불용 예상시 교부 중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중앙관리직 1인이 2024년 11월에서야 채용되었으므로, 미채용기간의 인건비는 교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5,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결국 2,1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인력을 제때 채용하여 인건비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이 예상될 경우 교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중앙관리직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검토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것		
49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무제도지원(2636-314)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편성된 5억 7,2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무요원의 급여·피복비·급식비·국내여비 그리고 관련 운영비 등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과 무관한 ‘나눔국민대상’의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동 사업의 운영비 900만원을 사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동 사업 예산을 이·전용 등 정확한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교부 요건이 소멸된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동 내역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상실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사업의 취소라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요건이 소멸한 경우 보조금 및 이자를 차질없이 반환받도록 주의할 것		
51	반복적인 예산조정 관행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685억 1,800만원의 예산액이 당초 편성되었으나, 10월 중 2차례 내역변경 및 전용을 통해 총 6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당초 예산편성액의 약 9%를 변경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취지에 벗어난 측면이 있음. - 2023년에도 동일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총 12억 2,000만원이 조정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내역변경·전용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수급자 변화율도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2	장애아동수당 사업을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에서 구분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와 지원 기준이 다른 별도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각 수당별 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전용 등 예산조정 절차 없이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해지며,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의 성과를 구분해 측정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거나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집행·정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예산 전용(50억 원)으로 누적 미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 이후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여 2024년말 기준 누적 미지급금이 193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편성 예산(358억 6,800만원)의 54%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수요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고, 미지급금 해소 예산도 편성할 것		
54	미이용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률은 84.7%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86.7%(2020년) → 86.0%(2021년) → 85.1%(2022년) → 84.7%(2023년) → 84.7%(2024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는 118,125명(2020년)에서 167,403명(2024년)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전체 대상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대상자의 증가가 서비스 이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과 매칭 체계 개선, 장기 미이용자 및 일시 중단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55	예산조정을 통한 가산급여 집행 관행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집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예산조정을 통해 연례적으로 적게는 약 22억원에서 많게는 약 251억원이 증액되어 집행되었음. <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 집행 현황 >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가산급여								다음 연도 이월 액			불용 액
				예산액		전년 도이 월액	이·전용 등	예 비 비	예산 현액	집행 액					
				본예산	추경										
			2020년	2,066	2,066	-	2,262	-	4,328	4,328	-	-			
			2021년	4,649	4,649	-	4,999	-	9,648	9,648	-	-			
			2022년	9,005	9,005	-	7,448	-	16,453	16,453	-	-			
2023년	21,925	21,925	-	25,153	-	47,078	47,078	-	-						
2024년	47,034	47,034	-	17,967	-	65,001	65,001	-	-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이용시간 증가 등 가산급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조정에 의존하는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												
56	보전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불균형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전급여 제도 시행 이후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매년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2024년에는 집행률이 330.8%에 이르고 있음. ○ 반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매년 기준인원에 미달하여 2023년과 2024년 집행률이 각각 20.7%, 13.3%에 불과한 등 예산 집행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전급여는 실제 이용 추이를 반영한 적 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실시하고, ▲ 집행률이 저조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는 인지도 제고와 신청 절차·접근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안내 방안을 마련할 것												
57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편성액, 실집행액, 편성 기준인원 및 실제 이용자 수 등은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편성액	796	796	651	651	651		
		실집행액	763	774	594	625	410		
		예산편성 기준인원	550명	550명	450명	450명	450명		
		이용자 수	413명	435명	405명	400명	365명		
			- 이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낮은 지원단가 로 인한 공급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언어발달지원은 지원단가(월 18만원)와 제공기관·인력 규모(165개소, 306명)가 발달 재활서비스(월 20만원, 2,668개소, 13,546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지원단가를 발달재활서비스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확충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 업실집행률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집 행률은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경우 47.3%,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경우 44.2%,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의 경우 11.3%로 예산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전문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은 바 우처 방식에서 경상보조 사업비 지급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59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전 시범사업 재평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1535-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청자 수만 반영하고 있어 성과관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및 성과지표 개편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성과지표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참여도(%)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참여 신청자 수 / 목표인원 수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 신청자 수 중심에서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지표를 포함하도록 개편할 것		
60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설치 부진 해소를 위한 유인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4개소 설치를 위해 1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충청남도 2개소 설치분 5억 7,100만 원은 전액 이월되고 나머지 5억 7,100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2025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현재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울산에만 설치되어 있어 신규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장애아동 보호체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를 상향이나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차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인 방안을 강구할 것		
61	한국장애인개발원 의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1538-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비중은 약 79%에 달하는데, 이는 인력 운영이 수탁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안정성이 높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발달장애인지원’ 등 10개의 수탁사업 예산에서 편성·집행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사업 중심 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탁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62	연구용역비 집행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154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2022년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이행 평가 등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연구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단순한 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연구비 집행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최초 연구계획 수립, 주제 설정, 연구자 섭외 등 전반적인 기획·운영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반연구비 집행 시, 연구 주제의 타당성 검토부터 연구자 검증,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63	실집행 저조 및 장기 미개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1542-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편성된 예산이 전액 또는 대부분 전용·감액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정된 기관의 시설계획 변경, 개보수 지연, 사업계획 미승인 등으로 예산을 반복 이월하거나 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개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2024년 기준, 미개소 상태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총 9개소로, 모두 1회 이상 이월을 거쳤고, 이 중 6곳은 2회 이상 이월이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 50% 수준인 시설·장비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소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64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의 장애의료기관 연계 강화 및 성과지표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1542-31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음에도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0.3% 수준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사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장애인건강보건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리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성과지표 설정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65	실집행이 저조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제도 정비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행률은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57.6%에 불과하고, 불용액은 25억원을 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행률 제고를 위해 인식개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	WHO FCTC(담배규제기 본협약) 국제분담금의 적시 납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WHO FCTC 국제분담금(ODA)(33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WHO FCTC는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국제 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WHO 총회에서 2003년 채택하여 2005년부터 발효한 국제협약으로, 국가별 분담금은 UN 분담률을 고려하여 경제규모(GDP), 국민소득(GNI), 외채 등을 반영하여 책정되고, 격년으로 매 11월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다음 회계기간(2년)의 분담금을 결정하여 납부하게 하는바, 2024년 우리나라의 분담률 적용 기준이 기존 2.94%에서 3.33%로 상향 조정되었고, USD 달러 환율 또한 상승하여 이미 확보한 2024년 예산(원화) 부족으로 \$51,808를 미납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국제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확실성 대응분 등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7	권역장애인구강진 료센터 설치비의 연례적 지연 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및 진료장비비 지원의 실행률은 7.2%에 그친바, 당초 2025년 1월 개소 예정이었던 서울 센터도 예정보다 지연되어 개소하는 등 연례적 설치 지연으로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하여 마취과 의사 확보가 필요함에도 대부분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인력으로 근무하는 상황임 ○ 현재까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중앙 및 권역장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인구강진료센터에서 경증장애인도 진료받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고, 전담 마취과 인력 확보 및 지역장애인구강진센터 지정·운영도 추진할 것		
68	농·어촌 보건소 등 신·증축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27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0~2023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60% 초반에 그쳤고, 2024년에는 실집행률이 49%까지 하락하였고, 특히 지자체의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연례적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69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73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액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2024회계연도에는 신규 설치 없이 7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65.9%에서 72.5%로 개선됨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집행 실적 저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 ○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국비 지원을 통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 활성화, 기존 지자체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개·보수 등의 방식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70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334-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자는 68만 3,225명이나 수검자는 26만 7,719명으로 수검률이 39.1%로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30%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내 발달평가 결과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화평가 권고’ 비율이 10.2%, 11%, 11.7%로 증가 추세임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주상병 분포를 고려한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할 것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비용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71	금연상담인력 처우 개선과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활성화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금연상담전화의 경우 이직률이 2023년 31.9%에서 2024년 36.59%로 증가하였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가 65.4%에 이르는 등 인력 운영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하여 금연상담인력 처우 개선과 금연상담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고할 것		
72	군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의 효과적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현재 군의 흡연율은 37.5%로 비슷한 연령대인 일반국민 19세~29세 성인 남성 흡연율(28.8%)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에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5% 수준인 5억 6,6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군인들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하여 군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앱’ 사업을 건강관리협회에서 개발한 ‘군 금연 길라잡이’ 모바일 앱과 연계·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군인 금연지원서비스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73	사업 지연에 따른 참여자 동의 확보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3031-52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총 약 77만명의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할 예정이나, 사업의 핵심적 과제인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한 공모 지연 등으로 검체 모집을 비롯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수행기관 단위의 실행 실적 또한 부진함.(범부처 기준 2024년도 예산 실행률 59.5%, 올해 8월 11일 기준 예산 집행률 25.5%)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참여자 모집실적 연도별 목표 및 실적 > (단위 : 천명)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4~2025</th><th rowspan="2">2026</th><th rowspan="2">2027</th><th rowspan="2">2028</th></tr><tr><th>목표</th><th>실적('25.8.7)</th></tr><tr><td>참여자 모집실적</td><td>206</td><td>54.1</td><td>192</td><td>177</td><td>177</td></tr></table> ※ 연도별 성과목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의 성과목표에 따라 작성.				구분	2024~2025		2026	2027	2028	목표	실적('25.8.7)	참여자 모집실적	206	54.1	192	177	177		
		구분	2024~2025		2026	2027		2028														
			목표	실적('25.8.7)																		
참여자 모집실적	206	54.1	192	177	177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 일정 차질의 최소화 및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확보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74	사업추진일정의 보다 정밀한 관리 및 콘텐츠 종류 재검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3034-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플랫폼 고도화 등 주요사업의 추진 일정 지연(2024년 10월 계약 체결, 계약기간 ' 24.11.~' 25.8.)에 따라 2024년도 예산 116억 700만원중 40억 1,500만원이 집행행되고, 73억 8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 전체 의료기관(약 3만 9천 개소) 중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6%(1,004개소)에 불과하고, 앱 다운로드 및 가입자 수 대비 실제 개인건강기록 다운로드 및 공유 등 사용자 활용도는 낮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건강·행정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종류 및 전달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앱의 국민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5	진료기록보관시스 템의 조속한 구축 및 진료기록 이관의 신속한 추진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정보화)(4333-32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진행(2023년의 경우 당초 200개소에서 100개소로, 2024년은 500개소에서 400개소로 축소)되어 진료기록 이관이 지체되고 있으며, 실제 휴·폐업하여 이관 대상인 의료기관 수(704개)가 사업 규모(600개소로 추산)를 초과하고 있음. ○ 치과와 한의원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진료기록 이관 추진 속도를 높일 것 ○ 보건복지부는 치과·한의원의 진료기록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76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3234-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5개 지역에 설치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역별 이용률 편차가 상당하고, 2024년도 이용률도 40~50%대에 머무는 등 활용이 저조함. <5개소(평창, 제천, 진안, 화순, 안동) 연도별 이용률> <table><tr><th>구분</th><th>평창</th><th>제천</th><th>진안</th><th>화순</th><th>안동</th><th>합계(평균)</th></tr><tr><td rowspan="5">시설 이용률 (%)</td><td>2020</td><td>4.5%</td><td>30.9%</td><td>7.0%</td><td>7.5%</td><td>16.2%</td><td>16.7%</td></tr><tr><td>2021</td><td>28.4%</td><td>38.8%</td><td>16.3%</td><td>9.9%</td><td>24.7%</td><td>23.9%</td></tr><tr><td>2022</td><td>73.0%</td><td>40.8%</td><td>28.2%</td><td>-</td><td>50.5%</td><td>37.7%</td></tr><tr><td>2023</td><td>88.4%</td><td>41.3%</td><td>30.6%</td><td>21.1%</td><td>48.8%</td><td>46.0%</td></tr><tr><td>2024</td><td>58.8%</td><td>45.1%</td><td>48.8%</td><td>37.8%</td><td>59.5%</td><td>50.0%</td></tr></table> * 자료: 보건복지부			구분	평창	제천	진안	화순	안동	합계(평균)	시설 이용률 (%)	2020	4.5%	30.9%	7.0%	7.5%	16.2%	16.7%	2021	28.4%	38.8%	16.3%	9.9%	24.7%	23.9%	2022	73.0%	40.8%	28.2%	-	50.5%	37.7%	2023	88.4%	41.3%	30.6%	21.1%	48.8%	46.0%	2024	58.8%	45.1%	48.8%	37.8%	59.5%	50.0%
		구분	평창			제천	진안	화순	안동	합계(평균)																																						
		시설 이용률 (%)	2020			4.5%	30.9%	7.0%	7.5%	16.2%	16.7%																																					
2021	28.4%		38.8%	16.3%	9.9%	24.7%	23.9%																																									
2022	73.0%		40.8%	28.2%	-	50.5%	37.7%																																									
2023	88.4%		41.3%	30.6%	21.1%	48.8%	46.0%																																									
2024	58.8%		45.1%	48.8%	37.8%	59.5%	50.0%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77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약산업육성(323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말 현재까지 인증 현황 등을 살펴보면 전체 원외탕전실 127개소 중 인증 원외탕전실은 21개소(16.5%)로 여전히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여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인증제의 사업성과가 저조함. ○ 의약품 제조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원외탕전실을 중심으로 제조업화가 진행되어 한방 제약산업 분야(식약처 소관)는 사양화에 접어드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조제한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함께 조제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의약산업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78	연구결과 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323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한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의학을 응용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실증적 제품 개발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7건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제품 출시 실적은 2건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 연구결과물의 상품화 등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79	과제 관리 강화 및 우수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32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에는 국가한의임상연구 내역사업에 13개 연구과제, 혁신형한의중개연구 내역사업에 13개 연구과제를 신규로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나, 혁신형한의중개연구의 경우 공모 과정에서 9.2:1의 과제선정 경쟁률을 보인 반면, 국가한의임상연구는 1.6: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음. ○ 2024년 12월말 현재 완료된 총 79개 연구과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과제는 9건, 보통이 69건, 미흡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우수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집중되었고, 2024년 완료 과제 중에는 우수 사례가 없는 등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2024년 연구결과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가한의임상연구에 대한 과제관리를 강화하고 질 높은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80	과도한 내역변경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의 예산 73억 9,100만원 중 29억 3,900만원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역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실수요에 따라 내역사업 간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심의·확정한 세부사업 규모를 집행 단계에서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내역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1	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과소 편성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을 낮게 편성하였으나, 건강보험 관련 규칙은 2024년 7월 5일 개정되었음. ○ 마약류 투약사범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비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은 과소편성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추이를 관찰하여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할 것		
8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솔림 완화 및 전체 기관 치료 역량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현재 전국 치료보호기관은 31개소이고, 이 중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9개소이며, 그 중에서 2개소(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의 치료보호 실적이 전체 치료보호기관 실적의 74.3%를 차지함. ○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아닌 22개소의 치료실적은 전체 875명의 10% 미만인 연간 80명 수준이고, 치료실적이 전무한 곳도 14개소에 이르는 등 치료기관 별 치료 실적 솔림 현상이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치료보호가 특정한 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 희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보건복지부는 31개 치료보호기관 전체의 치료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		
83	포항지진트라우마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345-32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024년 7월 18일부터 관내 정신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장 상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음. ○ 참고로 2024년 동 센터의 이용 실인원 수는 8,385명, 연인원은 28,628명에 이르는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포항트라우마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할 것		
84	내역사업 백지화를 통한 타 사업으로의 전액 내역변경 사례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345-32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경북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으로 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를 사유로 전액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었음. ○ 이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된 사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85	내역사업 백지화를 통한 타 사업으로의 전액 내역변경 사례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3345-324)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수도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으로 2억 200만원 이 편성되었으나,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를 사유로 전액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이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된 사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86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소명 및 과도한 예산 추계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주의 및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본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준비 과정이 부족하였음.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5년 동안의 총사업비는 최소 2,652억원에서 최대 4,661억 원까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4년 예산 실집행률도 31%에 불과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누적 신청자 수(48,386명)가 예산 편성 당시 신청자 수(8만명)의 60% 수준이고, 바우처 평균 사용횟수도 6.13회(최대는 8회)로서 낮은 수치를 보인 데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시범사업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 전에 예산이 집행된 과정(ISP 수립 이전에 바우처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업추진 체계를 재검토하며, 서비스 품질 및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 마음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과다 추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87	포상금 지급 관련 전반적 절차 재정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주의 및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포상금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되었고, 2024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년 7월부터 단 4개월 실적만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었으며, 공적조서 없이 정량적 지표만을 기반으로 포상 대상을 선정함. ○ 포상금 지급의 법령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실집행률이 전국 평균 30.1%보다 낮은 지자체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생계급여사업의 전체 예산이 7조 5,410억인데 포상금이 1억 8,500만원인 점, 의료급여사업의 전체 예산이 8조 9,377억원인데 포상금이 1억 6,000만원인 점과 비교할 때 동 사업(전체 예산 472억 4,900만원)의 포상금 5억원은 규모가 과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급 기준과 선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절차를 재정비하며 다른 복지 사업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양적·질적 상담실적 우수 상담사 등 포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제도개선)		
88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자격은 심리학과·상담학과 등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되는 자격들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담보되고 있다고 보이나, 심리상담 수련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동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상담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중 민간자격과 관련해서 자격 질 관리의 적절성(심리상담 수련시간, 보수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편성 변경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정신건강 증진사업(3346-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의 예산 일부(공공요금 4,100만원)를 내역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Tel. 1577-0199)의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을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단위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것		
90	국립병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나주병원 인건비(3802-100), 부곡병원 인건비(3902-100) 춘천병원 인건비(4002-100), 공주병원 인건비(4102-1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2021년 50.0%, 2022년 33.7%, 2023년 40.0%, 2024년 46.8%로 매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 원인으로는 채용공고 응시자 부족, 지방 근무 기피, 낮은 보수 수준, 특수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 인력 미충원에 대한 개선책과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1	뇌전증 지원센터 명칭 및 홈페이지 등 무단점유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2740-306)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뇌전증 지원센터의 종료된 보조사업 책임자가 센터 명칭 및 기존 홈페이지·상담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제1기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제2기 센터로의 이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요재산 이전·반환에 대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92	공공전문진료 센터 사업관리 및 집행점검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2740-307)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대규모 이월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4 결산 기준 이월액 40억 6,800만원, 실집행율 39.1%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국회는 이에 대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의결하였으나 2024회계연도에도 문제가 지속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세부사업계획서 승인 시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가능성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병원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이월 승인을 검토할 것(주의)		
93	수탁기관 등을 해당업무 평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하는 것의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275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업무 담당주체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1주기 분석 및 2주기 발전방향 제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유상 수행하게 하여 부적절함.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시 공개입찰이나 공모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저해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4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2750-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달리 3개 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혈액투석 의료취약지)에 대해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연간 약 143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나, 동 위원회는 그간 개최이력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조속히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5	호스피스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잔여병상· 대기정보 공개 등 시스템 개선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2756-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잔여병상·대기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호스피스의 전자적 신청도 가능하지 않아, 말기·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신속하게 호스피스전문기관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저해됨. ○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잔여병상·대기정보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나, 호스피스서비스 대기자의 사망 정보가 대기현황에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의 실효성이 저하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환자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등을 통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잔여병상수·대기환자수 정보 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96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 및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지역별 소아응급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7	소아전문상담 센터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의 2024년 예산 45억 6,000만원 중 500만원만이 집행되고 45억 5,500만원이 이월됨.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관련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상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사업계획 검토, 집행관리 및 정보화사업 절차 준수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98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취약지 응급환자 처치 등 자문을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거점병원을 연계하는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사용 저조 관련 사업 재구조화 등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사용이 저조함. ○ 2024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실사용기관 수는 15개소로 2015년 사업 출범 당시의 실사용기관 수인 21개소보다도 감소하였고, 2024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 사용실적이 0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간 실적이 전혀 없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을 즉시 폐지하고 유사 시스템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통·폐합하는 등 시급히 사업을 재구조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사용 저조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9	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2833-31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필수 7개 진료과별 최소 1명의 전담전문의를 두고 있는 곳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개소 중 1개소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충족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00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 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6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7,000만원이 각 지자체에 교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각 지 자체의 실집행액은 3억 4,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 하고, 2026년 예산 편성 시 집행을 제고 및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2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4333-32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8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 을 교부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병원에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재교 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 2024년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 예산 80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4차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70.1%에 해당하는 56억 600만원을 실집행하 였음. 이는 간병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시 집행점검을 철저히 할 것		
103	철저한 사업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4339-30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에는 2022년 마련된 ISP 계획에 따른 1차년도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민간위탁사 업비 22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수탁사업자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민간위탁계약 체결(2024.7.3.) 이후 조달청을 통한 사업 자 공모를 진행하기 전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에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는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더 이상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104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주의 및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의 경우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1.5~12.1%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법정 기준(14%)에 미달하고 있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법정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단, 최대한도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을 준수하고 있으나,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로 인하여 2024년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3% 수준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제도개선)		
105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연간 균등한 국고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연말 교부*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불확실성과 재무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24년 기준) 일반회계 예산액 10조 2,636억원 중 6조 2,136억원(60.5%)은 11월 말 이후 교부, 기금 계획액 1조 9,022억원은 전액 12월 26일 교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할 것		
10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 및 참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당의 모델별 정책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상병수당 사업비 내역사업 실집행률) (‘22) 23.2% (‘23) 30.3% (‘24) 59.1%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전체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2024년 기준 11%대에 불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목표 및 소요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대상 교육·모니터링 강화 등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의료기관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07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모형설계·시범사 업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 시범사업 모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75.3% 감소되었으며, 정률제 수당 상한액(66,000원)이 적고,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 50%만 해당되어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 동 사업의 실행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수당·모형을 설계하고 시범사업지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본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		
108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4931-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은 882일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심사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법정 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정비가 필요한 요양급여기준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109	의료대란 수습을	관련사업명	국민건강보험재정	주의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활용 부적절	지적사항	○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으로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의료보장에 사용되어야 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을 위협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결정과정 관련 책임소재 규명 이후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진료 지원 중단 검토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수습에 근거 없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것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한 것으로 이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11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연구과제 평가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PM 공석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선정과제(25개) 중 일부가 2025년 12월에 1단계 종료될 예정임에도 과제별 성과지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자가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동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동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111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관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024년 4월 완료되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산액 일부(135억원)가 집행되어 예산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발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예산편성 절차 전반의 철저한 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	방지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예산편성 절차 전반을 철저히 관리할 것		
112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30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25억 3,600만원)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이 아닌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전환하여 편성할 것		
11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3033-34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전공의 연구지원’ 내내역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교부된 15억원 중 9억 4,700만원(약 63.1%)이 반납되어 실행되지 못하였음 ○ 2024년 1/4분기부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공의 다수가 사직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교부하기로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2024년 7월까지 교부 완료한바,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교부할 것		
114	바이오헬스넷 관리·운영 사업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3033-50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채용정보가 게재되는 등 ‘바이오헬스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계속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넷(보건산업 잡포털)’ 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넷 관리·운영’ 내내역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																																																																																				
115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응시언어 다변화 및 합격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환자 유치지원(3037-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적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최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언어를 다변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의료 통역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합격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의 응시언어를 다변화하고, 합격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116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3039-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내역사업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가운데 보조금이 매년 교부되어 미집행 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내역사업 결산 내역(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보건복지부</th><th colspan="8">충청북도</th></tr><tr><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본예산</th><th>추경</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r></thead><tbody><tr><td>21결산</td><td>1,000</td><td>1,000</td><td>1,000</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r><tr><td>22결산</td><td>4,513</td><td>4,513</td><td>4,513</td><td>4,513</td><td>1,000</td><td>5,513</td><td>457</td><td>4,513</td><td>-</td><td>5,056</td><td>-</td></tr><tr><td>23결산</td><td>4,501</td><td>4,501</td><td>4,501</td><td>4,501</td><td>5,056</td><td>9,557</td><td>500</td><td>4,501</td><td>-</td><td>8,978</td><td>79</td></tr><tr><td>24결산</td><td>2,000</td><td>2,000</td><td>2,000</td><td>2,000</td><td>8,978</td><td>10,978</td><td>4,578</td><td>2,000</td><td>-</td><td>6,400</td><td>-</td></tr></tbody></table>										구분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21결산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22결산	4,513	4,513	4,513	4,513	1,000	5,513	457	4,513	-	5,056	-	23결산	4,501	4,501	4,501	4,501	5,056	9,557	500	4,501	-	8,978	79	24결산	2,000	2,000	2,000	2,000	8,978	10,978	4,578	2,000	-	6,400	-
		구분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21결산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22결산	4,513	4,513	4,513	4,513	1,000	5,513	457	4,513	-	5,056	-																																																																												
23결산	4,501	4,501	4,501	4,501	5,056	9,557	500	4,501	-	8,978	79																																																																												
24결산	2,000	2,000	2,000	2,000	8,978	10,978	4,578	2,000	-	6,400	-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의약품 등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시행준비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2033-301),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2131-303)	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의약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20일에 개정되어 2024년 7월 21일 시행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2024년 7월 22일 개정하면서 기존 포장재 사용을 1년간 허용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음. ○ 사실상 법률이 정한 시행일을 1년 연기한 것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 하였고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에 실질적 불편을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이 정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 예산은 2022년 3억 5,600만원에서 2024년 2억 2,4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대면교육 실시 횟수와 교육대상자 수는 2021년 150회, 5,070명에서 2024년 73회, 3,5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이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설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사고 및 정보인식 격차에 적극 대응할 것		
3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예정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한정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나, 일반 소비자들은 공개된 유해성분이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성분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동일한 담배임에도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일반포집법에 따라 측정하여 담배갑에 표시하는 타르 및 니코틴 표시값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강화포집법으로 측정하여 공개하는 표시값이 다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개하는 담배 유해성분의 유해성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담배사업법」상 담뱃갑 표시 측정기준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측정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4	기후 온난화 대비 식중독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중독 예방 및 관리(12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는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로, 2024년 성과지표 달성도는 61%에 그쳤음. 또한, 최근 3년간 달성도를 보면 2022년 122.5%, 2023년 114.5%, 2024년 6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KDI 나라경제 보고서('20.9월호)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할 때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4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09년간(1912~2020년) 연평균기온이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인 1.0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5	지방자치단체 배분 시험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1033-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의 2024년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배분된 시험연구비의 사용 내역을 파악한 결과, 같은 독소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음에도 각 시·도별로 재료비에 사용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		
6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1515-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수출국 현지의 생산단계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에는 20개국 140개소에서 1,07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12개국 107개소, 803개 제품으로 감소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업자 대상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1515-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국가 간 활발한 교역에 따라 수입식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위해 수입식품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보임. ○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현지 실사 대상도 증가하고 있으나,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약 800여 개소)에 비해 현지실사 건수는 연 200여 개소 내외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8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1232-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2021년 7,333개소에서 2024년 7,718개소로 5.3% 증가한 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같은 기간 1,806개소에서 1,377개소로 23.8% 감소함. ○ 2024년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5,091개소 대비 우수판매업소 비율은 3.9%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평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연도말 전용을 통한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일반회계 -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2031-300) ○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이란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QR 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의약품 첨부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2년간(2023~2024년) e-라벨 시범사업을 별도 예산편성 없이 수행하고, 평가 예산을 타 세부사업에서 전용하여 진행하였음. ○ 예산 소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 시에 미리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10	의약품 등 해외실사 소요의 정확한 예측 및 목적이 다른 사업예산 집행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일반회계 -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7037-650) ○ 의약품 등 현지실사를 위하여 지출한 국외여비 17억 1,100만원 중 ‘인허가 심사지원 등’ 세부사업에서 1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이·전용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편성된 의약품 등 현지실사 내역사업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초과지출이 불가하여 다른 세부사업 예산을 통해 부족한 국외여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반하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해외 실사 소요를 예측하여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과소·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목적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11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231-301) ○ 2024년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실적은 344kg으로, 전년 대비 27%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 대상 지역의 무리한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현재 시범사업의 범위는 거점약국 100개소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이 사업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 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거점약국 및 환자·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2	국제기구 협력 사업 사전 조건 합의 절차 강화 및 협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ODA)(7036-31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국제기구(UNODC)와 파견인력의 직급·근무지·채용방식 등 핵심 조건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해당 연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사업도 철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조건 합의 절차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할 것		
13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비목 변경, 추가공사 등 사업 지연이 반복되어 매년 보조사업비가 이월되고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건립 및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14	생약누리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4032-31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제주센터 전시동 ‘생약누리’ 개관 이후 일반인과 학생 대상의 교육·체험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 관람객 수가 50명 이하에 불과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역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관람객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저조한 것은 개관 이후 초기 단계에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생약누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질병관리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단가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센병환자관리지원(6133-30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한 급식비(* 24년 3,400원/인/일, * 25년 3,670원/인/일)와 난방비(* 24년 71.4만원/세대/연, * 25년 77만원/세대/연), 재가 한센인 생계비(월 19만원, 연 226만원) 지원 단가가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편성·지원되고 있어 단가를 상향 현실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25년 저소득층 노인 또는 노숙인 공공 무료 급식비 지원 단가 10,500원(일) 등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한센인 사업대상자에 대한 급식비·난방비 및 생계비 지원 단가를 다른 취약계층 지원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것		
2	한센인사회복지센 터 요양보호사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센병환자관리지원(6133-30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한센인사회복지센터(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는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센인사회복지센터는 현 입소자가 42명인 반면, 요양보호사는 12명에 불과해 1명당 관리 입소자 수 3.5명으로, 직원 배치기준 1명당 2.1명을 크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기준에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노인요양시설로 운영중인 한센인사회복지센터가 단계적으로라도 요양보호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		
3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센병환자관리지원(6133-30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최근 10년간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 37명 중 외국인은 21명(54.3%), 내국인은 16명(45.7%)이며, 2024년에는 내국인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 신환자는 5명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발생하였음. ○ 외국인 한센병환자의 경우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한센병 다발성 국가 출신이 많고 언어적 제약,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의료접근성도 낮음. WHO 발표, 한센병 다발성(Global priority) 23개국 인도, 브라질, <u>인도네시아</u>, 콩고, 모잠비크, <u>방글라데시</u>,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u>네팔</u>,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u>스리랑카</u>, <u>필리핀</u>, 앙골라, 남수단, <u>미얀마</u>,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 자료원: Global leprosy upd, mate, 2023(WHO)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파 위험성이 큰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검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조류 인플루엔자 초동대응인력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비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주요 감염병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뎅기열, 코로나19 등의 유행이 관찰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임.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대비 초동대응인력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H5N1)의 충분한 비축·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AI 살처분자 등 초동대응인력의 예방접종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비축 방안을 마련할 것		
5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지연 문제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6234-33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진행 현황을 보면, 호남권 조선대병원은 공모 후 공사를 착공하였고, 충청권은 조달청 중간재설계 적정성 재검토(' 25.7.~) 중이며, 경남·경북권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준비중이고,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실집행 실적을 보면 공사비 47억 4,700만원, 감리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비 4억 6,5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등 예산현액(241억 600만원)의 21.7%인 52억 2,400만원만 집행되었음. ○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재유행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 당해연도에 원활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예측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교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6	탄저백신 국산화에 따른 비축 본격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6331-301)	○ 탄저백신은 생물테러 등 감염병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수행 목적의 공공백신으로 그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7억원을 집행하였음. - 탄저백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에 대비 탄저백신의 국내 자급을 위해 기반연구('97~'01)를 시작으로, 백신 공정개발 및 비임상('02~'07) 및 임상시험('08~'23)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23.10)하고 심의·보완('24~'25)을 완료하여 2025. 4. 8.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음.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이 국산화된 만큼 생물테러 가능성,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의 특성, 국가안보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비 가능한 탄저백신 물량을 비축할 것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이 국산화된 만큼 생물테러 가능성,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의 특성, 국가안보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비 가능한 탄저백신 물량을 비축할 것		
7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2021년부터 계획되었으나 총사업비·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 2021년부터 설립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으나 매년 전액 불용되거나 이월되었음. ○ 설립 지연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성과 창출과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2021년부터 계획되었으나 총사업비·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공유 지연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기능도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8	인체자원 수집 확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6631-31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2028년까지 75만명분의 인체자원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매년 2024년부터 연평균 15만명분의 인체자원을 확보해야 하나, 인체자원 수집 실적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2022년 28,529명, 2023년 20,125명, 2024년 18,004명으로 인체자원 확보가 저조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고부가가치 바이오데이터 생산 및 인체자원 관리기술 개발 등을 위해 인체자원 수집 확대 노력을 강화할 것		
9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예산편성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2-314)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을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 대비 20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인 8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정하여 충당하였음. ○ 시설장비비의 당초 예산 18억원 중 44.4%인 8억원을 조정감함에 따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연구직(2024년 12월말 기준 7명)의 연구환경도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 시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10	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 국고 반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 6634-345)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은 2024년 운영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인건비·경상비 등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타 사업단의 경우 매년 운영비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단의 2024년 운영비 집행잔액은 이월 집행 대신 국고 반납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II (R&D, 6634-352)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208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2024년 예산은 사업설계비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2024년 9월 기본조사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12월에 기본조사설계 중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음. ○ ‘인체자원 저장시설 운영’ 내내역사업의 경우에도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6,300만원(예산액 3억 1,700만원의 51.4%)을 불용한 바, 이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6634-345)의 지연 추진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인체자원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12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 집행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16억 5,400만원 대비 83.7%인 97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로 인해 2024년 12월말 기준 시험연구인력은 정원 242명 대비 현원은 210명에 불과함. - 특히,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개발사업’은 집행률이 57.1%에 지나지 않고,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은 70%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시험연구인력지원 예산의 낮은 집행률은 국민보건 관련 R&D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시험연구인력의 예산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13	내성결핵전문치료 센터 건립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특별회계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4761-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예산 초과, 2023년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지연, 2024년에는 사업기간 연장과 물가변동을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89.4%에 해당하는 126억 2,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의료진 및 결핵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하여 결핵관리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이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4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지정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11,357개 의료기관의 2.6%인 300개에 불과하여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부족은 지역별 유행 상황의 파악 곤란,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와 초기 대응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의 호흡기 표본감시기관 수와 비교하여도 미국 3,000개소(한국의 10배), 일본 5,000개소(한국의 17배)에 비하여도 현저히 적고, 인구 10만명당 감시기관 수도 우리나라는 0.58개로, 일본 4개, 미국 0.88개, 영국 2.89개 등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적절한 수의 의원급 표본감시기관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15	신종 감염병 및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코로나19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호흡기 비말과 에어로졸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자의 3분의 1은 무증상일 수 있어 전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수적임.		
			○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실효행률이 63%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불용액이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음을 시사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절차와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 및 팬데믹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16	인수공통감염병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변종 크로이펠트-야콥병) 예방을 위한 부검센터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 소 해면상뇌병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있는 소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발병하는 변종 CJD(Creutzfeldt-Jakob disease, 크로이펠트-야콥병)는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어, 발현될 경우 치명적이고 사회 파급력이 큰 질병으로 국가 차원의 조기 발견 체계가 필수적임. ○ 변종 CJD 진단에 필수적인 생검 및 부검이 2023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검센터 운영이 사실상 시설 유지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변종 CJD 확산을 위해 시신 기증 등을 포함한 부검센터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결핵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결핵환자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전담인력 감소 시 관리망 이탈 환자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파악을 위한 고용형태를 조사한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및 조사시점에 채용 중인 인력의 비율로 추정시 매년 27~ 67% 가량의 이직률 발생이 추정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		
18	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기관 의무 이행 독려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결핵환자 발생 수를 보면, 2011년 50,491명이 발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년 17,944명이 발생하여 이는 인구 10만명당 35.2명으로 OECD 38개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고된 전체 결핵환자 중 집단시설 소속이 확인된 경우는 2024년 6,185건으로 전체 환자(17,944명)의 약 34.5%를 차지함. ○ 2024년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기관 98,193개소 중 66.1%에 해당하는 64,865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이행 조사 결과, 조사 응답 집단시설 수는 44,189개소로 조사대상기관의 45%에 불과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체계적인 결핵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검진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결핵검진 이행 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19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조속한 정산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의 경우 인구수 과소 추계(0-1세 인구수가 예산 편성 대비 증가)의 사유로 356억 2,3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도 172억 2,4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 2024년의 경우 피보조기관 교부예산에서 43억 6,8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사업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356억 2,300만원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		
		시정요구사항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의 조속한 정산과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도 철저히 할 것		
20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접종대상 백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12~17세 여성 및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남성에게도 확대하는 내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제22대 국회에 제출·계류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질병부담 및 비용효과 측면 등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대상을 확대할 것		
2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 6월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 10만 307건 중 심의건수는 10만 246건으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진 2,300여건을 포함하여 약 28.5%인 2만 8,566건에 대하여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졌고, 71.8%에 해당하는 7만 2,000여건이 기각되었음. ○ 이상반응 신고 중 사망 보상 신청 건수는 2,455건이며, 사망 보상 건수는 25건으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별법 제정 취지가 보상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심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2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미지급금 발생 방지 조치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고령화에 따른 등록환자의 증가로 2019년부터 인센티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12년 서울시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로 확대된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연례적으로 인센티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암역학조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암역학조사 계획액 2억 8,700만원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암역학조사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근거 교육에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 암역학조사반 회의운영 경비 등에 계획액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계획액의 대부분인 암역학조사(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2억 5,00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암역학조사 의뢰건수 미발생에 따라 매년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성 개선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4	희귀질환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노력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희귀질환자 지원(6534-306)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희귀질환자 통합적 진단지원사업) 동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건수를 제한하여 2023~2024년의 경우 예산 소진으로 사업 수행 5개월만에 진단검사 접수가 종료되었고, 진단 접근성이 취약한 비수도권 중심 지원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필요		2024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 바 있음. ○ (희귀질환 등록사업) 체계적인 등록자료 수집·분석에 기반한 희귀질환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등록사업의 체계적 개선과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희귀질환자 통합적 진단지원사업) 질병관리청은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단 지원사업의 연중 상시 운영, 진단지원기관 단계적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희귀질환 등록사업)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등록자료 수집·분석 기반의 희귀질환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성과를 점검할 것		

3. 부대의견: 총 7건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인력의 확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후화된 경로당의 시설보수를 위하여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인상과 자격 수당 신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종합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해 1년 지연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를 파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즉석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를 우유, 빵 등 소비기한에 민감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